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1010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10104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소479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노동조합 C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선

변론 종결 2021. 10. 8.

판결 선고 2021. 11.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소479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2,2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추가)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 1988. 9. 18. 입사하여 2012. 10. 30. 퇴직한 사람으로, 근무기간 290개월간 피고의 조합원으로 피고의 '지부복지공제규정'에 따라 전별금 지급 대상자였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정된 전별금 14,432,620원을 받았다. 피고는 당시 '지부복지공제규정'에서 정한 대로 전별금의 35%를 전별기금으로 공제하였다.

A 전별금: 22,852,000원(290개월×400원×조합원수 197명)

B 전별기금 공제: 7,998,200원(전별금의 35%)

C 선급공제(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다른 조합원 전별금): 421,180원

실수령액(=A-B-C) 14,432,620원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역에 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전별금에서 전별기금으로 불법 공제하여 미지급한 전별금 7,998,200원

원고는 근무기간 퇴직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여 조합원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으로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지부복지공제규정'은 퇴직자 전별금은 재직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따로 전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전별금에서 35%를 공제한다는 규정은 위 지급규정에 위반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② 상여금에서 공제한 전별기금 590,000원

'지부복지공제규정'은 회원 1인당 전별기금 공제액이 월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02. 8. 22. 분기별 상여금에서 50,000원을 전별기금으로 공제한다는

무효인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재직기간 중 상여금에서 59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③ 전별예치금으로 징수한 704,000원

피고는 퇴직자가 없는 달이나 근속이 적어 전별금 지급 후 남은 전별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전별예치금으로 적립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원고의 재직기간 중 전별예치금 명목으로 704,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1, 5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1997년 무렵 상조회에 관한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전별금은 회원 퇴직 시 지급하고, 회원 가입일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개월수에 따라 월 4,000원을 전 회원으로부터 공제 거출하며, 회원 1인당 전별금으로 걷는 돈은 월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2) 피고의 대의원대회는 2000. 3. 6. '지부복지공제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중 조합원 퇴직 시 지급되는 전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별기금조성

① 퇴직전별금에서 2% 공제 적립

② 분기별(상여금 지급 시) 10,000원 공제 적립

③ 복지공제회 가입금 10,000원

■ 전별기금 보장성 확보

전별금 190명분 보장 지급(결여인원 발생 시 전별기금에서 대체 지급)

■ 전별금 지급방법

조합원 가입일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개월수를 계산하여 1인당 월 400원을 전 조합원이 공제 거출한다(퇴직자 근무개월수×400원×조합원수)

■ 전별금을 회원 1인당 월 60,000원을 초과 공제할 수 없다.

3) 2000. 12. 24., 2002. 8. 22., 2007. 7. 30. '지부복지공제규정' 개정 시 전별금 구성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전별금구성

① 퇴직전별금에서 2% 공제 적립

② 분기별(상여금 지급 시) 50,000원 공제 적립(한시적용, 2002. 8. 22. 수정) (이하 '이 사건 상여금 공제규정'이라 한다)

* 2007. 7. 30. 개정: 2007년 8월분부터 상여금 지급방식이 월별지급으로 바뀌면서 전별금 상여금을 공제하지 않음

③ 복지공제회 가입금 10,000원

④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전별금 60,000원 공제 적립(2000. 12. 24. 신설)

⑤ 전별자가 없는 달에도 전별금 1인당 60,000원을 공제 적립(2000. 12. 24. 신설) (이하 '이 사건 정액 공제규정'이라 한다)

4) 전별금 적립을 위해 퇴직전별금에서 2% 공제하는 규정은 공제하는 비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000. 3. 6.~2006. 3. 15.	2%
2006. 3. 16.~	5%부터 매년 1%씩 인상하여 10%를 적정선으로 한다.
2008년~2009년	40%
2010년~2012년	35%
2013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전별금이 150명분[150명×근무개월수×400원(C)]으로 변경되었고, 150명을 초과하는 인원 부분은 전액 전별금 예치금으로 귀속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12. 20. 피고가 전별금에서 공제하였던 35%의 예치금

7,998,200원에 관하여 미지급 전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가소80794호). 원고는 피고가 35%의 예치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전별금에서 35%를

공제하는 규정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며, 장기근속한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및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8. 9. 11. 전별금에서 35%를 공제하는 '지부복지공제규정'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5. 14.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대전지방법원 2018나114356호)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미지급 전별금(전별기금 공제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전별금에서 35%를 공제하는 '지부복지공제규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7년도 소송에서 한 청구와 같은 내용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2017년도 소송에서의 기각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지부복지공제규정' 규정은 상여금에서 별도로 전별기금을 공제하는 이 사건 상여금 공제규정과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직자 급여에서 전별기금을 공제하는 이 사건 정액 공제규정이다.

단체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각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부복지공제규정'은 피고의 노동조합사업으로서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애경사와 업무상 교통사고 대처, 퇴직시 전별금 지급'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상호부조제도는 회원 상호간 출연에 의하여 운영되고, 그 출연 및 부조금의 지급에 있어 회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나, 이러한 평등은 기본적인 납부의무와 부조금 수령 지위에 있어서의 평등으로 제한된다. 다른 시점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그 납부금액이나 부조금액이 같아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받는 부조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n개월을 근무한 자가 퇴직할 때 재직조합원 1인당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n×400원'이고, 퇴직자가 받게 되는 전별금은 'n×400원×재직조합원의 수'이고, 상호회 규약으로 전별금을 걷어

지급하던 때부터도 회원 1인당 월 60,000원을 초과하여 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퇴직할 때 비로소 재직조합원들로부터 전별금을 각출하기만 한다면 특정 달에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퇴직하는 경우 1회 각출하는 금액으로는 전별금을 전부 충당할 수가 없게 된다. 퇴직자가 없는 달에도 월 정액을 적립하거나 퇴직자 근속이 적어 전별금 지급 후 남은 전별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전별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급여 외에 상여금에서도 일괄적으로 10,000원 또는 5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지부복지공제규정'을 개정한 것은 기존 '지부복지공제규정'에 따라 전별금을 모금해서는 전별금 기금이 고갈되어 향후 퇴직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고, 그러한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 공제규정이 '지부복지공제규정'에서 전별금 지급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각출하는 돈은 조합원 1인당 월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기존 규정의 취지는 월 임금에서 각출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인데,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과 그 성격, 지급시기(2007년 8월 상여금 지급방식이 월별지급으로 바뀌면서 이 사건 상여금 공제규정은 삭제되었다)가 다를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공제규정의 제정취지를 납득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선

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